



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

안녕하십니까?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늘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
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**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제도*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관련 제도를 알려드리니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급여 청구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. 학부모님께서도 안전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
공제급여 대상	1.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 2.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·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 등
공제급여 제외 대상	1. 학교안전사고와 무관한 경우 2. 상대방의 고의 등으로 인한 사고 3. 질병,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4. 자동차·선박·항공기 사고, 수련시설 사고 등
공제급여 종류	1. 요양급여 :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(본인부담금) 2. 장애급여 :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애가 있을 때 지급 3. 간병급여 :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4. 유족급여 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(장의비 포함) ※ 요양급여 중 비급여 치료비는 「학교안전법」에 따라 일부 및 전액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(예시 : 상급 병실료, 비급여 주사료, 도수치료, 신 치료·재료비, 첩약, 약침 등)
공제급여 절차	학교안전사고 발생→ 반드시 1주 안에 담임선생님께 신청, 개인정보동의서, 위임장 제출요함(학부모) →사고발생통지서 작성(담임, 교과담임)→안전공제회에 등록(학교)→사고통지 접수(공제회)→ 치료완료 후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(학부모) →청구서 작성 및 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신청(학교)→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결정 및 학부모 계좌 송금(공제회)→결정통보서 전자문서 발송(공제회)→결정통보서 학부모 전달(학교·담임교사) ※ 사고발생통지서가 안전공제회에 접수되어야 공제급여가 가능하므로 공제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꼭 담임이나 보건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학 부 모 구비서류 (공제급여청구서)	1. 상병명이 표기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한화 10만원 초과 시) 2. 진료비 계산서·세부내역서 원본(치료항목별 금액이 표기되어야 함) 3. MRI 및 CT 촬영 등 영상검사 사본(해당시) 4. 청구자(보호자) 한국 통장 사본
유의사항	1.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서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빨리 담임선생님과 상의 2.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.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소멸시효 : 사고 발생 후 치료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의 치료에 한해 청구 가능하며 청구 가능한 기간은 3년 이내 4.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한도 : 요양급여(한화 2천만원), 장애·간병·유족 급여(한화 2억원)

2021. 3. 3.

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